

# 양 천 구

## 시 정 요 구

제 목 문서열람범위 설정 부적정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기록물은 업무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문서보안, 보안결재, 열람 범위 지정 및 열람제한 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아래의 표와 같이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열람범위를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열람범위를 관련 규정 및 부서 상황을 검토하여 수정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앞으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